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기재사항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02)3433-0600	최초지정일 2009.06.02.
(사)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7가길 23 8층	(02)921-5053	최초지정일 2012.09.21.

2.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주요업무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및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 구매실적·계획의 취합, 위원회의 운영 지원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 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 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4.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지정 사후관리 관련 사무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지원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 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 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8.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6.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 한 컨설팅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8.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 한 홍보
13. 법 제7조의2에 따른 중증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14.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 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9.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15.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실시 에 대한 지원	
16. 법 제21조1호에 따른 청문의 실 시에 대한 지원	